2022년도 특정감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 연구개발비 관리 점검 5차 -

2022. 1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감 사 실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배경 및 목적 ····· 1
2. 감사대상 및 감사 중점사항 ····· 1
3. 감사기간 및 인원 ····· 2
4. 점검 대상과제 ····· 2

Ⅱ. 감사결과 ····· 3

1. 총평 ····· 3
2. 지적사항 총괄 ····· 3
3. 지적사항 요약 ····· 3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6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6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6
3. 모범사례 일람표 ····· 7

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8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나,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감사실에서는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과 평가관리원 직원의 연구개발비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연구개발비의 부적정 집행을 방지하고,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비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감사대상 및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연구개발비 집행 증빙을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EZBARO 등에 중복제출이 의심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예비조사 기간(2022. 11. 28.~12. 2.)동안 RCMS와 EZBARO의 정보연계를 통하여 확보한 영수증 사본 등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개발비 용도 외 집행이 의심되는 연구개발과제 중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에 대한 내용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증빙서류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 2회를 실시하여 연구개발비 집행 내역과 실물 검토를 실시하였다. 특히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집행 내역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활용되었

는지 여부, 연구개발비 집행과 관련된 증빙서류의 적정성, 연구재료의 과다 계상 및 구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였다.

[표 1] 감사 중점사항

감사 중점사항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증빙의 중복증빙 여부 - 연구시설장비·재료비를 과제 외 목적으로 사용 여부 - 연구시설장비·재료비를 양산 제품 생산에 사용 여부 - 연구개발비 실제 집행 여부 및 허위 증빙서류 등록 등 - 연구재료비 과다 계상 및 집행 행위의 적절성 점검 등

3. 감사기간 및 인원

본 감사는 2022. 11. 28.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사전검토 및 현장 점검을 거쳐,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감사반장 1명, 감사반원 4명을 투입하여 2022. 12. 6.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6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는 2022. 12. 27.에 상임감사가 최종 확정하였다.

4. 점검대상 과제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RCMS) 적용대상과제 중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RCMS 외 EZBARO에도 중복 증빙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제 3건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번	과제번호	과제명	대상기관명	부서명
1	□□□□ □□□□	●●●●●●●●●●●●●●●●●●●●	●●●●●●●	○○○○○○
2	■■■■ ■■■■	◇◇◇◇◇◇◇◇◇◇◇◇◇◇◇◇◇◇◇◇	◔◔◔◔◔◔◔	◴◴◴◔◴
3	◳◳◳◳ ◳◳◳◳	◔◔◔◔◔◔◔◔◔◔◔◔◔◔◔◔◔◔◔	◑◑◑◑◑	◍◍◍◍◍◍

Ⅱ. 감사결과

1. 총평

연구개발비 중복증빙 및 용도외 사용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점검하여 전파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연구개발비 집행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투명하고 올바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유도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원)

합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감액	기타								
5	-	9,543	-	-	3 (9,543)	3 (9,543)	-	-	-	-	-	-	-	-	-	2 (2)

3. 지적사항 요약

【처분요구사항】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부적정

① ㈜㈜㈜㈜㈜㈜은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집행액 5,500,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4,583,150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시정)

② ◎◎◎◎◎◎은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집행액 4,774,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4,675,514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시정)

③ ◇◇◇◇◇◇는 연구비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집행액 297,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284,763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시정)

【모범사례】

1) 연구개발비의 부적정 집행 적발업무 적극수행

관련자는 RCMS 분석 결과에 대하여 사업비 증빙내역 및 증빙자료에 대한 서면검토를 통하여 지급한 연구수당의 회수, 재료비와 연구시설 장비비의 허위증빙 등 연구비 부적정 집행 정황을 발견하고 감사실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사용이 확인된 연구수당 24,317,900원을 회수하고 재료비 및 연구시설 장비비 259,933,200원에 대한 부정사용 및 허위보고사실을 적발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사업비 부적정 집행 예방 및 방지에 기여하였다.

2) 연구개발비의 부적정 집행 적발업무 적극수행

관련자는 민원신고에 따른 감사실 조사과정에서 서면검토 및 실태조사

에 적극 참여하여 재료비의 과다집행 및 과제와 무관한 생산용 장비에 재료비를 사용한 정황 발견 등에 기여하였고 현장실태조사 실시를 통하여 과제책임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총 80,479,910원에 대한 부적정 집행사실을 확인하고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사업비 부적정 집행 예방 및 방지에 기여하였다.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지 적 사 항	순번	조 치 요 구 사 항	조치 구분	처분 요구일	조치 기한일	처리부서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관리 부적정	1	○ 연구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5,500천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4,583천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시정	2022. 12	2023. 2 (통보일로부터 2개월)	◇◇◇◇◇◇
	2	○ 연구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집행액 4,774천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4,676천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시정	2022. 12	2023. 2 (통보일로부터 2개월)	□□□□□□
	3	○ 연구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집행액 297천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285천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시정	2022. 12	2023. 2 (통보일로부터 2개월)	▤▤▤▤▤▤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해당사항 없음

3. 모범사례 일람표

제목	순번	관계부서	성명	공적요약	기대효과
연구개발비의 부적정 집행 적발 업무 적극수행	1	□□□□□ □□	▣▣▣ ▣▣	○정산 중 연구수당 및 재료비, 연구시설 장비비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연구개발비의 검토, 현장실태조사 및 특별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부정사용 연구개발비 24,317,900원의 회수와 재료비 및 연구시설 장비비 259,933,200원에 대한 부정사용 사실 확인 등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적발 적극업무 수행	○적극적인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개발비의 적극적인 검토 및 회수를 통해 사업비의 부적정 집행 예방 및 방지에 기여
연구개발비의 부적정 집행 적발 업무 적극수행	2	▤▤ ▤▤▤▤	◑◑◑ ◑◑	○수행기관의 부패신고를 통해 연구개발비의 부적정 사용 의혹을 접수하고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현장실태조사와 소명자료 검토를 통하여 총 80,479,910원에 대한 부정사용 사실 확인 등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적발 업무 적극 수행	○부패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현장실태조사 실시, 소명자료 검토 및 회수를 통해 사업비의 부적정 집행 예방 및 방지에 기여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감사자	◓◓◓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9,534,427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 ▧▧▧▧▧▧)	처분 요구일	2022. 12.	회신 기한일	2023. 2. (통보일로부터 2개월)

시 정

제　　목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① ◓◓◓◓◓◓◓◓◓(▣▣▣▣▣▣▣)

② ▤▤▤▤▤▤▤▤▤(▦▦▦▦▦▦▦▦, ▨▨▨▨▨▨)

조 치 부 서　① ◓◓◓◓◓◓◓◓◓(▣▣▣▣▣▣▣)

② ▤▤▤▤▤▤▤▤▤(▦▦▦▦▦▦▦▦, ▨▨▨▨▨▨)

내　　용

1. 업무 개요

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산업기술혁신

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연구비요령”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관리 부적정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연구비요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목적 및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요령 제16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비 변경 내역을 포함한 집행내역을 모두 등록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요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4]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금액은 회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2020.2.부터 현재까지 RCMS시스템과 연구재단의 EZBARO시스템 간 정보를 연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관리원이 최근 3년(2019~2021년) 간 지원한 연구개발과제 가운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RCMS와 EZBARO 모두에 등록한 중복증빙이 의심되는 과제 3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였고 해당수행기관에 RCMS 및

EZBARO에 중복 등록한 세금계산서 등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증빙을 제시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3개 수행기관에서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RCMS와 EZBARO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중복증빙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연구개발비는 과제에서 필요사항에 대하여 실소요금액을 산정·집행하고 적정한 자료를 통하여 사용실적을 증빙하여야하나 동일한 증빙자료를 상이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증빙으로 사용할 경우 연구개발비를 중복 지급받는 것이 되어 사업비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다만, 소명 등 사실여부 확인절차를 진행한 결과 담당자 착오에 의한 실수로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사용실적을 증빙하였다는 진술로 연구개발비 정산담당자의 과실이 확인되었고, 절차에 따라 반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표]와 같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중복 증빙한 직접비 중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수가 필요하다.

[표] RCMS 및 EZBARO 이중증빙 집행 및 회수 대상액

(단위: 원)

담당부서	순번	과제번호	연도 (단계-연차)	연구개발기관명	성명	부적정 집행액	회수 대상액1)
□□ □□□□	1	○○○○○	2019(0-3)	◓◓◓◓◓	▦▦▦	5,500,000	4,583,150
	소 계					5,500,000	4,583,150
■■■ ■■■	2	◎◎◎◎◎	2021(0-2)	◎◎◎◎◎◎	▥▥▥	4,774,000	4,675,514
	소 계					4,474,000	4,675,514
□□□□	3	◓◓◓◓◓	2021(0-3)	▤▤▤▤	▥▥▥	297,000	284,763

담당부서	순번	과제번호	연도 (단계-연차)	연구개발기관명	성명	부적정 집행액	회수 대상액1)
□□□□			소 계			297,000	284,763
합 계						10,571,000	9,543,427

관계부서 의견

◎◎◎◎◎◎, ◇◇◇◇◇◇◇,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부적정 집행액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은 연구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5,500,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4,583,150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은 연구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4,774,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4,675,514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1) 부적정 집행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 83.33% (정부출연금 : 50,000천원, 민간현금 : 10,000천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 97.56% (정부출연금 : 200,000천원, 민간현금 : 5,000천원), 目目目目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 95.88% (정부출연금 : 407,000천원, 민간현금 : 10,175천원)

③ ㉮㉮㉮㉮㉮㉮㉮(㉥㉥㉥㉥㉥㉥)은 연구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297,000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284,763원을 회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2	감사자	ㅇㅇㅇ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	처분요구일	2022.12.	회신 기한일	-

모 범 사 례

제　　목　**연구개발비의 부적정 집행 적발업무 적극수행**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 등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제30조에 따르며, 부적정 집행 사업비는 공통운영요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있다.

한편, 평가관리원은 사업비 부적정 집행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RCMS 시스템을 통하여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 분석, 신용 분석 등

에 대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과제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있다.

이러한 RCMS 분석 결과에 대하여 ㉠㉠㉠㉠㉠㉠ ㉡㉡㉡ ㉡㉡은 사업비 증빙내역 및 증빙자료에 대한 서면검토를 진행하였고, 연구수당을 지급한 이후 회수하여 워크숍 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재료비와 연구시설장비비의 허위 증빙자료와 실제 구매물품 증빙자료가 함께 있는 연구비 부적정 집행 정황을 발견하여 감사실과 합동으로 해당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이후에는 과제책임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와 각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1개 과제[2]에서 부당 집행한 연구수당 24,317,900원 및 용도 외로 집행한 재료비 및 연구시설 장비비 등 259,933,200원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 증빙자료 위조·변조, 거짓보고 사실을 확인[3]하고, 해당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제외함은 물론 1차년도 재정산을 통한 정부출연금 해당 지분 환수, 위탁회계법인에 2차년도 정밀 정산을 요청하는 등 적극업무수행을 통하여 사업비 부적정 집행 예방 및 방지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RCMS 분석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예방 및 방지에 기여한 관련자에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

2) 총 3과제를 수행중으로 실사결과 1개 과제에서만 문제점을 발견함.
3) '20년, '21년, '22년 등 3개년 집행분에 대해 확인. '20년 집행분은 재정산 통보, '21년 집행분은 위탁회계법인 정밀 정산중

[관련자] ▣▣▣▣▣▣▣ □□(□□) 目目目

감사결과 모범사례

소 속	직 급	성 명
▣▣▣▣▣▣▣	□□	目目目
제목: 연구개발비의 부적정 집행 적발 적극업무 수행		
추 천 내 용		

□ 정산 중 연구수당 및 재료비, 연구시설 장비비의 부정사용 의심으로 사업비 전체 증빙자료 검토

○ RCMS 증빙자료 검토 중 연구수당 회수에 대한 기안문 적발

- RCMS 분석 결과에 따른 정산 중 연구수당 회수 후 내부 공용 활동비(학술대회, 워크샵, 간담회 등)로 사용 예정이라는 기안문 및 내역에 대한 정황 등을 발견

○ 재료비, 연구시설 장비비 RCMS 증빙자료 검토 중 부정사용 추가 적발

- 연구수당 증빙 자료 검토 후 연구개발비 전체 사용 내역을 확인하던 중 재료비,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하여 RCMS에 등록된 하나의 물품에 두 개의 증빙서류가 있는 것을 확인함(허위 증빙자료, 실제 구매물품 증빙자료)
- 증빙서류와 실제 구매 물품이 다른 내용과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내부 연구 목적용으로 집행한 것을 확인함

□ 현장실태조사 및 특별평가위원회를 통한 부정사용 연구개발비 환수,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제외 통보

○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부정사용 확인서 작성

- 총 2회에 걸쳐 문제기관에 방문하여 과제책임자 및 실무자, 참여연구원들의 면담을 통해 연구수당 및 재료비, 장비비 등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여 부정사용 내용 확인 및 확인서 작성
- 연구수당 24,317,900원 부당 회수하고, 재료비 및 연구시설 장비비 259,933,200원에 대해 연구개발비 지출 증빙자료 위조·변조, 거짓보고 확인

○ 특별평가위원회를 통한 공동연구개발기관 제외 통보(11월 23일)

○ 제재처분평가단에 상정 예정

일련번호	3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	처분요구일	2022.12.	회신 기한일	-

모 범 사 례

제　　목　연구개발비의 부적정 집행 적발업무 적극수행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 등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르며, 부적정 집행 사업비는 공통운영요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있다.

한편 평가관리원 감사실은 연구비 부적정 집행 신고 등 민원 신고

사항에 대해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은 민원신고에 따른 감사실의 조사과정에서 서면검토 및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료비를 과다하게 집행하거나 과제수행과 무관한 생산용 장비에 재료비를 사용한 등 한 정황을 발견하였다.

실태조사 이후에는 과제책임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와 각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1개 과제에서 과다 집행한 재료비 79,118,910원 및 해당과제 연구와 무관하게 사용한 재료비 1,361,000원 등 총 80,479,910원[4]에 대한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통보하는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사업비 부적정 집행 방지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방지에 기여한 관련자에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관련자] ▣▣▣▣▣▣▣ □□(□□) 目目目

4) 추가정산을 통해 추가 불인정된 금액은 인거비 과다계상분 등을 포함하여 284백만원임

소 속	직 급	성 명
◔◔◔◔◔	◓◓	▣▣▣
제목 : 사업비 부적정 집행 적발 적극업무 수행		
추 천 내 용		

□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소명자료 집중검토를 통한 사업비 부정 적발

○ RCMS 및 제출된 보고서 검토를 통한 재료비 과다계상 적발

- 수행기관 내부자 제보를 통해 정부출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함
-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1 ~ 5차년 연차 보고서, 최종보고서, RCMS 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검토결과 과다하게 재료비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황을 발견함

○ 지속적인 현장실태조사와 관련 소명자료 검토를 통한 재료비 환수

- 지속적인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기업대표,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등 관련자와 (비)대면 면담을 실시하고, 의심되는 정황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함

  * 최종실태조사 1회 실시('19.10.24), 특별실태조사 2회 실시('22.2.22, '22.4.20)

- 현장실태조사 전/후 과제책임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요청 및 검토하였으며, 소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비 사용 현황을 파악함
- 감사실의 협조 및 소명한 내용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과다계상한 재료비 총 79,118,910원을 불인정하였으며, 과제 수행과 무관한 생산용 장비에 사용한 재료를 추가로 확인하여 1,361,000원을 불인정하여 환수 통보함